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인보험用)

모바일간편청구

1. 보험계약 인적사항 및 보상안내

※ 개인정보등의서 및 보험금 수령계좌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 및 심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상해,질병 발생자)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 7 5 0 0 0 0 – 1 0 0 0 0 0 0 ◀
	휴대전화	▶ 0 1 0 – 0 0 □ □ – 0 0 □ □ ◀	직장명/하시는 일	공무원
	주소	서울시 용산로 회나무로13가길, 101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 ☐ ◀ 대상
보험계약자	성명	성춘향	주민번호	▶ 7 8 0 0 0 0 – 2 0 0 0 0 0 0 ◀
보상안내 받으실 분	▶ V ◀ 보험계약자 ▶ ☐ ◀ 피보험자 ▶ ☐ ◀ 기타 (성명 : 관계 :)			
	휴대전화	▶ 0 1 0 – 0 0 △ △ – 0 0 △ △ ◀		

※ 사고접수안내는 보상안내 받으실 분에게, 보험금지급안내는 보험금수익자에게 안내됩니다. 보험금지급에 대한 추가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 중에 선택 체크 ☑ 및 기재바랍니다.

▶ ☐ ◀ 팩스 ▶ ☐ ◀ E-mail ▶ ☐ ◀ (일반)우편 (팩스번호/이메일주소/우편주소 기재)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손해, 생명보험, 공제보험 및 단체보험) ▶ V ◀ 있음 ▶ ☐ ◀ 없음

※ 있는 경우 해당보험사에 ☑체크

보험회사	☐ 삼성	☐ 현대	☐ DB	☐ 메리츠	☐ 한화	☐ 흥국	☐ 롯데	☐ 농협	V 기타(우체국보험)

※ 실손의료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실손보상 담보는 다른 회사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처리되므로 타사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사고사항 (▶ V ◀ 상해 / ▶ ☐ ◀ 질병 / ▶ ☐ ◀ 교통사고) ※ ▶ ☐ ◀ 추가청구 (추가청구시 ☑ 표시)

사고(발병) 일시	▶ 2 0 2 0 년 1 0 월 0 1 일 ◀	사고장소 (질병제외)	대구 중구 동성로 CGV 앞
사고(내원) 경위	(추가청구건은 기존 사고접수번호 기재) 빗길에 맨홀뚜껑에 미끄러져 응급실 내원	병원명 (진료과)	XX 병원 / 응급의학과
		진단명	발목 인대 파열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 ▶ ☐ ◀ 아니오 ▶ ☐ ◀ 예 보험처리 회사명:	담당자 및 연락처:	
	본인차량번호 : 차량탑승위치 : ▶ ☐ 운전석 ☐ 조수석 ☐ 뒷자석 ☐ 보행중 ☐ 기타 ( ) ◀		
일부청구시 청구담보	☐ 입원 ☐ 통원 ☐ 수술 ☐ 진단 ☐ 사망 ☐ 장해 ☐ 운전자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단,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상단에 별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4. 보험금 수령 계좌 (보험금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外 별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수익자 계좌정보	▶ ☐ ◀ 자동이체계좌로 송금 요청시 ☑ 체크 (※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계좌가 보험금수익자 본인 계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별도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에는 아래의 계좌정보 항목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은행명	KB국민	계좌번호	123-456-789X	예금주 홍길남

5. 채권 양도 안내사항

피보험자(수익자)본인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된 진료비는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을 치료한 병원의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해당 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KB손해보험에게 피보험자(수익자)가 치료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원활한 채권행사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KB손해보험에게 위임합니다.

동의 ▶ V ◀

6. 고객 확인사항

본인은 뒷면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등)을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청구자 본인은 상기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 2 0 2 0 년 1 2 월 0 1 일 ◀	보험금 청구자 ▶	홍길남 (서명 (인)) ◀

※ 보험사기(고의/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